

의안번호	2212037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5.8.18.
추 계 번호	25D427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00조의2(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00조의2(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원의 소송비용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¹⁾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²⁾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그런데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의 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³⁾
-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을 완화하여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음. 유사한 취지에서 UN의 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소송에서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⁴⁾
-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은 여전히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상 공익소송의 정의를 명시하거나 공익소송의 범주와 요건을 구체화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개정안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면제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의 구체적인 대상, 요건 및 수준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수입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김나루,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의 개선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2023.9.), 103면.

4) 앞의 논문, 104면.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